

제 호

산업교육센터 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:

2. 대표:

3. 주소: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부장관 직인